

2024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24. 5.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회의명	2024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일시	2024. 5. 22.(월) 10시
회의장소	영상회의
심의위원회	제2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위원 이종수 위원, 이승민 위원, 원은자 위원, 권현정 위원, 김병준 위원 ○ 배석 이동판 정보공개팀장(간사), 박소영 주무관(서기)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29 : 하자보수목록 및 하자보수 전후 사진 ○ 2024-30 : 2024년 제8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동영상 (녹음파일 포함) ○ 2024-31 : 행정처분서(건축사징계처분서) ○ 2024-32 : 독일 오티리엔수도원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근대기 사진 조사자료의 전체 목록(사진파일 포함) ○ 2024-33 : (1인가구담당관-4474) 2024년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구매계약제안서 정량적 평가 결과보고 문서의 평가내용 일체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23 : 인용 ○ 2024-24 : 기각(일부각하) ○ 2024-25 : 기각 ○ 2024-26 : 기각 ○ 2024-27 : 기각

1. [의안번호 2024-29] : 하자보수 목록 및 하자보수 전후 사진

○ 000 위원(장)

안전 상정 첫 번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29호 송파소방서 예방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전은 000 위원님께서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장)

안녕하세요.

우선은 안전상정요청서의 검토결과에 대한 부분에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이걸 다 적어주셨는데 기각을 구한다는 취지이신 거지요?

○ 000 담당자

맞습니다.

○ 000 위원(장)

지금 청구인은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최초의... □□□□□□ 여기는 오피스텔인가요? 아파트 어쨌든 건물에 대한 밀폐된 창문 파괴망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민원을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니까 그 질의 검토의견에 기재되어 있는 관계자로부터 받은 하자보수 목록이랑 하자보수 전후(前後)사진 이거를 요청한 것 같아요.

○ 000 담당자

맞습니다.

○ 000 위원(장)

그래서 소관부서에서는 지금 비공개 정보로 결정 올리신 이 두 건 하자보수 목록이랑 전후사진 이게 7호에 해당한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A/S 작업을 어떤 작업을 했더라는 일정과 그리고 창문 부분에 망치를 재설치한 그 사진 이것만 있는데 이게 특별히, 그러니까 지금 민원인이 이 하자보수를 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 000 담당자

지금 정보공개 요청자는 그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고 있나요?

○ 000 담당자

어떤 업체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A/S 작업 일정이란 보수, 망치 재설치한 이 사진만 가지고는 이게 특별히 그 법인의 어떤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떤 부분을 소관부서에서는 이게 공개되면 어떤 영업상의 비밀이나 그 법인의 이익을 해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 000 담당자

일단은 하자보수 목록은 그거 말고도 이외에 여러 하자보수 건들이 쪽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구태여 내놓고서는 공표하고 이러이러한 하자가 났습니다 하고 그런 거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주기 싫은 거지요, 그 공사업체 입장에서는요.

○ 000 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그게 이게 하자가 소명이 돼서 보수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지,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할지가 조금 의문이라서요. 이게 만약에 아까 31호에서 보니까 소송 중에 있는 것 같고, 보내주신 자료에도 보면... 어디 갔지요?

○ 000 담당자

의견서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업체에서 받은 의견서를 보시면요.

○ 000 위원(장)

참고자료에서 여기에 소송 진행 중이어서 외부유출을 금합니다라는 표시가 있는 걸로 봐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혹시 4호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정확히 어떤 소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화자와 관련된 수분양자들이 단체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면 이 건물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다라고 하면 재판에서 증거신청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4호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소관부서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000 담당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는 당연히 공개를 해 드려야지요.

그리고 저희가 제3자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해당 내용은 회사의 영업기밀에 해당하고 이런 것을 해당 업체에서 구체적인 기재를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고려해서 이거는 만약에 재판 중에 저희가 요청이 오면 그때는 당연히 공개를 해 드리지만 구태여서 이 사람들이 목록표를 저희한테 보내온 걸 가지고, 다른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000 위원(장)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제가 몇 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관계자로부터 수령한 하자보수 목록, 하자보수 전후사진이라고 했는데요. 이 관계자가 누군가요? △△△△△라는 회사인가요?

○ 000 담당자

맞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이 A/S 작업일정에 대한 하자보수 부분은 이거 입주민이 알아야 될 정보 아닌가요? 이게 하자보수 방법이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하자보수 대상인 거잖아요. 이걸 입주민이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영업비밀로 포섭을 하시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 000 담당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맞고요. 이 사람들은 입주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모든 것을 그분들이 가서 보고 싶으면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선임을, 다 그분들이 동의해서 또 공사도 진행할 수도 있고 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법적인 소송관계에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열람이

제한된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그거를 공개를 안 해 주니까 오히려 더 분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하자보수 전후사진,

○ 000 담당자

저희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요. 그거는 입주민이 저희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자세한 건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잔금이나 그런 관계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권리라는 게 제한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떤 법적으로,

○ 000 위원(장)

당사자들끼리 관계에서 지금 건물사용승인취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일단 이 안전만 봤을 때요. 이 하자 때문에 이게 건물사용승인이 승인취소가 날 사안도 아니고, 이게 보수공사가 됐으면 오히려 입주민한테는 더 사용승인취소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이걸 굳이 비공개해서 오해를 살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지금 비공개 대상이 이 사진하고 공용부 주요 A/S 작업 일정 중에 15번 이것인 거잖아요. 전체가 다가 아니고요.

○ 000 담당자

목록에는 여러 목록 어떤 대상이 있는 거지요.

○ 000 위원(장)

비공개 대상이 아닌 거지요? 이 15번만 청구한 거지요?

○ 000 담당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15번이라고 하면...

○ 000 위원(장)

주요 A/S 작업일정이 있는데요, 하자보수 목록.

○ 000 담당자

전체이지요. 이 목록을 다 달라는 거지요.

○ 000 위원(장)

1번부터 19번까지 전부 다인 거예요?

○ 000 담당자

그렇지요. 목록이라 하면 쪽 나열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 000 위원(장)

그런데 이게 정말 하자보수 대상이 맞다면 이걸 입주민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보수방법이면 비공개 대상이지만요.

○ 000 담당자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이거를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저희 취지와 다르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사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 000 위원(장)

사용할 우려가 있다면 그거는 이 보수 하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적용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런 파장까지 문제가 됐으면, 하자 없이 공사를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라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걸 왜 굳이 감춰야 되냐, 소송이 잦다 하더라도 이거는 입주민이 당연히 알아야 될 정보인데.

서울시가 이거를 공개한다고 해서 딱히 불이익을 받을 만한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입주민 이면 당연히 알아야 될 정보고요. 그런데 지금 재판 진행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무슨 재판 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이게 재판을 진행 중인 사건으로도 포섭할 수 있는 데요. 지금 어떤 재판인지도 모르고 단지 이 하자보수 목록하고 하자사진을 비공개 대상으로 포섭을 해놓으면 이게 영업비밀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영업비밀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으로 얘기를 하시니까요. 그러면 재판이 어떤 재판이고, 이 자료가 재판에서 불이익하냐, 아니면 입주민한테 유리한 정보냐 이거를 저희가 판단하면 여기에 포섭시켜서 저희가 또 비공개 사유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000 위원(장)

저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볼게요.

하자보수 목록, 그러니까 문서의 이름은 주요 A/S 작업일정이라고 돼 있는 건데요. 이게 1번부터 19번까지 있는데, 그중에 소방하고 관련된 거는 15번 한 개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 부처에서도 갖고 있는 게 15번 관련된 사진만 받으신 거고요. 맞나요?

○ 000 담당자

사진은 15번 사진만 받았습시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 000 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건물이 완공되어서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지금 소방점검도 함께 있어야 되지요?

○ 000 담당자

맞습니다.

○ 000 위원(장)

그리고 하자보수업체에 제3자 의견서를 해서 비공개 의견서를 함께 제출을 하셨는데요. 앞서 000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인지도 조금 의아하고요. 예를 들어서 하자 내역이라면 이게 하자보수업체가 아니라 시공사의 경영상·영업상 무슨 비밀에는 해당될지 몰라도 하자보수업체가 보수내역을 지금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게 어떻게 이게 영업상·경영상 비밀입니까?

○ 000 담당자

위원장님, 이거는 시공사 목록입니다. 시공사가 하자보수업체한테 전달해 준 거지요.

○ 000 위원(장)

업체한테? 그러면 시공사가 영업상·경영상 비밀을 주장해야 되지 하자보수업체는 그걸 보수한 것밖에 없는데 그 보수업체가 무슨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됩니까? 현재는 보수업체가 지금 제3자 의견서 낸 거 아닌가요?

○ 000 담당자

아닙니다. 시공사가 낸 겁니다.

○ 000 위원(장)

시공사 아닌 것 같던데. 보수업체 같던데요?

○ 000 담당자

△△△△△가 시공사입니다. 시공사에서 낸 겁니다.

○ 000 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상 질의 마무리하고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담당자께서는 퇴장하셨다가 저희 위원들 논의 후에 다시 재입장하시면 됩니다.

(소관부서 지도관 퇴장)

000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000 위원(장)

일단 저는 이 해당 정보의 목록과 사진이 7호에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소송 중이라고 하니 원칙적으로는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서 하자보수 목록을 원고, 아마 지금 청구인이 원고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원고 측에서 증거신청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사실 지금 소관부서에서 어떤 실무상의 곤란한 입장이 있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사실 정확하게 어떤 사건명이나 사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소관부서에서 소명하지 못했고, 이게 바로 이런 하자가 있어서 하자를 이런 일정에 따라서 보수했다, 그리고 이 사진이 현출되는 것만으로 지금 여기 시공업체에 특별히 불이익이 된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의견을 일단 드리는 바입니다.

○ 000 위원(장)

이어서 그러면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저도 이 완강기 사진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사진이거든요. 이게 왜 비공개

대상인지 저도 이해가 안 가고요.

주요부 A/S 작업일정 이 전체도 이거는 재판과 상관없이 입주민이면 이 하자 내역은 알아야 되는 정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무슨 하자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도 공개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일단 영업상 비밀은 아닌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개 범위랑 관련해서 보면 지금 여기는 소방부서거든요. 그러면 하자 목록 전체에서 15번을 빼고는 이 소방부서가 사실은 취득할 일이 없는 부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청구한 사람은 전부 목록을 공개해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사진은 다 공개를 하는데 목록은 15번만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소방부서가 이게 갖고 있는 게 나머지는 소방이랑 전혀 관계없는 하자 목록인데요. 물론 이거를 제출한 사람이 15번만 딱 특정해서 소방과에 제출했어도 될 문제인데, 굳이 그냥 이거를 통째로 다 제출해서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한데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부분인용 의견이고요.

또 하나, 4호 재판과 관련된 내용은 사항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헌 자체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때의 비공개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직무수행은 재판이거든요. 공공기관의 직무수행이 곤란해지는 거는 사유가 아니고요. 그게 공개됐을 때 법원이 곤란해지면, 재판부가 곤란해지면 그거는 비공개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공개를 한들 법원은 직무수행이 곤란해지는 것과는 하나도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령 우리가 재판을 특정한다 하더라도 4호 사유는 될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제가 처음 참여해서 내용 어떻게 하시는지 보느라 그랬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도 지금 요구한 소방재난본부한테 소방과 관련된 부분이 라면 아까 000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서요.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제9조 4호에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서울시가 이 재판의 당사자가 되거나 하는 쪽으로 주로 이 사건을 접근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서울시가 재판 당사자가 아니어도 저는 이 법문의 어떤 내용상으로는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보지만, 앞서 000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돼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다음에 7호의 경우에도 보시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지금 논란이 있지만, 그 뒤에 보면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목이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오피스텔의 하자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예정하기에 어떤 사람의 신체·생명에 대한 위해가 이 하자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이 단서조항 가 목 때문에 7호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출석하신 다섯 분 위원님께서 이 네 분은 지금 전부공개고요. 다음에 000 위원님께서 그 해당 목록 중에서 소방 관련된 것만 공개하자라고 지금 부분인용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7호의 가 목에 따라서 이게 사람의 생명·신체 전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이 하자 목록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꼭 굳이 소방서에 어떤 해당되는
이것만 부분인용하는 게 과연 마땅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000 위원(장)

저는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요.

자기 관련 업무와 특별히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지금 다 넣긴 한 건데요. 넓게 보면 보유
하게 된 정보이기는 해서요. 그래서 다수 의견이 그러하시면 그렇게 결정하셔도 될 것 같
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소관부서 담당자는 다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담당자 입장)

저희들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건을 인용한다는 의견이므로 **의안번호
제2024-29호는 “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용은 지금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하자 목록하고 전후사진 모두 공개입니다.

2. [의안번호 2024-30] : 2024년 제8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동영상(녹음파일 포함)

○ 000 위원(장)

안건 상정 두 번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30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000 위원님께서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장)

안녕하세요. 청구인이 지금 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었던 거지요? 그리고 답변을 했고, 통보도 했고요.

○ 000 팀장

하셨습니다.

○ 000 위원(장)

그래서 말씀하신 판례 중에도 사실은 본인도 참석을 했었고, 지금 영상파일은 없는 거지요? 음성녹음은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하신 거고요. 그렇지요?

○ 000 팀장

맞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행정소송으로 관련된 내용이, 새롭게 발견된 내용이 없다는 각하 사유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회의록에 보면 이 청구인 자체가 자기가 행정소송을 한 당사자는 아니라는 답변이 있던데 그런가요?

주신 자료 중에 회의록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요. 행정소송 중인데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본인이 한 게 아니더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 해서요.

○ 000 팀장

제가 알기로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에 아마 어떤 재개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아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과정에서 행정소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것은 저도 자료가 지금 없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 청구인이 시민감사를 청구한 사안과 연관된 내용으로 행정소송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더 추가적인 질문이 없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000 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 녹음파일이 회의록하고 똑같이 업무상 작성하는 문서인가요? 녹음파일하고 회의록이 똑같아요. 아니면 이 회의록을 위에서 그냥 부가적으로 작성하는, 회의장에서 녹음을 하는 건가요?

○ 000 팀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어떤 기초자료로서요. 왜냐하면 회의 당시에 다 기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자료로서 녹음을 해놓고요.

○ 000 위원(장)

그냥 서울시에서 같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라는 거지요?

○ 000 팀장

그런데 그걸 공식문서처럼 보관하는 것은 아니고, 기록물로 보관한다기보다는 보조자료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보조자료잖아요.

○ 000 팀장

네.

○ 000 위원(장)

그러니까 회의록이 공식 관리보관문서고 녹음파일은 회의록 작성을 위한 보조문서인 거잖아요.

○ 000 팀장

그렇습니다.

○ 000 위원(장)

지금까지 녹음파일이나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게 공개하거나 비공개 대상에서 포섭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 같아서요.

○ 000 팀장

맞습니다.

○ 000 위원(장)

이 녹음파일은... 저는 각하 대상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것까지 굳이 공개 비공개 여부를 논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000 팀장

맞습니다.

○ 000 위원(장)

이게 5호를 주셨는데요. 감사와 관련돼서 생성된 문서로 봐서 비공개 사유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회의록이 주된 문서고 녹음파일은 보조문서라서 이게 관리문서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각하를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로 검토를 했거든요.

○ 000 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록 작성을 위한 보조자료인 음성녹음파일이 정식문서로 등록됐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회의록 작성을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각하를 처음부터 했었으면 됐었던 사항일 수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기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로 말씀을 드렸고요. 각하를 해도 사실은 무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그 회의록에 매번 발언자인 위원들의 실명이 지금 기재되어 있나요?

○ 000 팀장

공개할 때는 위원님들 성함은 비공개 처리한 상태에서 발언 내용만 아실 수 있도록 하고 공개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시면 소관부서 담당자께서 저는 잠시 퇴장해 주십시오. 저희들 토론하겠습니다.

○ 000 팀장

감사합니다.

○ 000 위원(장)

감사합니다.

(소관부서 팀장 퇴장)

먼저 주심위원이신 000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십시오.

○ 000 위원(장)

저도 주신 자료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게 공개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관부서에서 처리한 대로 각하하는 걸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이게 우리 회의록, 그러니까 청구인의 이야기가 회의록의 진정성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취지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자체로 각하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정보공개이고 문서공개법은 아니니까 정보의 범위가 넓어서요.

다만 저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신 그 사항을 보면 이게 위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신상은 파악할 수 없도록 익명화해서 지금 회의 내용만 공개하는 형태인데, 그렇다면 음성을 공개해버리면 누군지가 특정이 되니까 오히려 저는 6호 사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5호 사유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음성·영상이 녹음되면 위원들 다 개개인이 특정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6호 사유로 이거를 기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제가 예전에 있을 때 이 녹음파일 같은 경우는 속기를 위해서 속기사가 녹음파일을 저장하고, 그거에 따라서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이 녹음파일은 사실 공식 관리문서가 아니라고 봤었거든요. 서울시에서 이 녹음파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확인을 한 건데요. 그런데 서울시 자체에서 녹음파일을 이렇게 저장을 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넓게는 관리하고 있는 문서로 봐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회의 자체가 시민감사위원회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자료가 다 공개 대상은 아니고, 거기에 참석해 있는 직원들도 기밀유지 의무도 있고, 회의결과도 정보공개법 9조에 따라서 비공개 사유가 있으면 비공개 사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저는 회의록이 일단 당사자한테 공개는 됐지만, 녹음파일 자체가 서울시 보관문서라고 한다면 감사에 관한 사항도 포섭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음성 사생활, 000 위원님 말씀처럼 목소리 같은 경우는 음성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누구나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변조해서 공개도 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게까지 회의록이 이미 공개된 마당에 녹음파일까지 공개하는 거는 너무 무리한 요구 같아서요.

저도 감사와 아니면 사생활 보호 이 두 개로 포섭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지금 어쨌든 회의동영상, 녹음파일 포함 이렇게 이의신청이 된 거라서요. 동영상은 아까 소관부서에서 없다고 각하 의견 주신 그대로 하고요. 저도 녹음파일은 5호, 6호 같이 포섭해서 기각 의견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우리 6호 사유에 어떻든 간에 지금 이 녹음파일이 제공되면 해당 발언자의 신상이 특정되고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6호 사유로 해서 녹음파일 부분은 기각 의견을 하면 어떨까 싶은 의견으로 지금 모아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6호만으로 해도 저는 충분히 기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000 위원(장)

이 문서 자체가 그냥 감사와 관련된 비공개로도 포섭을 해 줘서 그냥 비공개 대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녹음파일은 5호, 6호 사유를 다 해서 기각 의견으로 지금 의견을 모으는 것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000 위원(장)

그러시면 소관 부서 담당자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팀장 입장)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 및 각하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 없음)

기각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6호 모두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30호**는 “**기각(일부 각하)**”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안번호 2024-31] : 행정처분서(건축사징계처분서)

○ 000 위원(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4-31호 건축기획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 000 위원(장)

제가 몇 개 질의드리자면 지금 정보공개청구인은 이 ■■■■■■■■ 오피스텔 감리 관련해서 해당 건축사들의 징계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취지잖아요. 맞습니까?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장)

그리고 지금 비공개자료에 보면 해당하는 경고 등등 해서 내역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보공개청구인께서는 보면 송파구청에 의뢰해서 감리자가 업무정지 처분이 되었음을 확인받았습니까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확인이 된 건가요?

○ 000 주무관

송파구청에서 자기네들이 저희한테 정보를 받고, 그 민원인들한테 정보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 부분은 공개가 됐는데. 그러면 송파구청에서도 해당 건축사 다수의 구체적인 징계내역까지는 공개를 안 한 모양이지요?

○ 000 주무관

구체적인 징계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나오는 거라서 결과만 통보받고 어떤 내용으로 징계처분됐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어서 공개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000 위원(장)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000 위원(장)

소관부서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세요.

(소관부서 주무관 퇴장)

○ 000 위원(장)

주심위원으로서 제 의견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몇 달 전에 또 이와 같은 유사한 사안으로 해당 건축사의 징계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사안이 개인의 징계내역 등등이 사생활 정보에 해당된다고 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안 역시 해당 관련 건축사들의 징계내역은 사생활 정보에 해당되어서 저는 기각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저도 동의합니다.

○ 000 위원(장)

저도 동의합니다.

○ 000 위원(장)

저도 동의합니다.

○ 000 위원(장)

동의합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소관부서 담당자께서는 재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주무관 입장)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 없음)

그리고 기각 사유는 6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로 기각 의견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31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안번호 2024-32] : 독일 오티리엔수도원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근대기사진 조사자료의 전체 목록(사진파일
포함)

○ 000 위원(장)

안건 상정 네 번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32호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소관부서 담당자님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주무관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의 학예연구사 조선경입니다.

○ 000 위원(장)

반갑습니다.

본 안건은 000 위원님께서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장)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일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지금 공개한 거는 전혀 없는 거지요?

○ 000 주무관

없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사진 5,579장 이거 말고 2014년 학술총서하고 그다음에 2014년 특별전시회 일부 사진을 활용해서 지금 자료를 만드셨는데요. 이거는 120 몇 점인가 그거 사용 허락받은 걸로 지금 만드신 거겠네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학술총서하고 특별전시 이거는 공개된 자료 아닌가요?

○ 000 주무관

이거는 일부가 공개되도록 협의가 됐기 때문에 자료를 펼 수 있었고요. 나머지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 거라서 저희가 협의를 얻지 않은 자료였거든요.

○ 000 위원(장)

그거는 알겠는데 왜 학술총서하고 특별전시 이 두 자료까지 비공개하셨나 그게 궁금해서요.

○ 000 주무관

이거는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PDF로도 다운받아서 볼 수 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게 비공개 대상 자료 중에 이게 포함돼 있길래요.

○ 000 주무관

아닙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이미 공개돼 있는 거면 여기서 다운받으라고 안내는 이렇게 해 주시거나 하셨나요?

그러니까 청구인 입장에서는 이거 갖고 있는 자료인가요, 이거는 두 개는?

○ 000 주무관

그러니까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일부 자료로는 본인이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이렇게 한정적이라고 생각해서 나머지 대해서, 이게 2015년도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한 문구가 5,500건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 그 문구 보시고 이렇게 연락을 하셨고요. 이제 이것까지 공개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게 협의를 얻지 않은 자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렸고, 원 소장처에 문의를 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는 몇 번 드렸습니다.

○ 000 위원(장)

그거는 제가 자료에서 다 확인했고요.

다만 아까 2014년 학술총서 특별전시는 그냥 공개한다든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부분공개 결정이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비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다 이미 공개된 자료를 굳이 비공개로 하셨나 해서 여쭙본 거였고요.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 000 주무관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미 공개된 자료 이외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주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공개를 한다고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000 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서 각하 의견을 주시고, 그다음에 근거 및 사유로는 5호와 7호를 주셨어요. 그런데 각하 의견이면 서울시가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은 문서라고 봐서 그냥 각하하시면 되는데 이 근거 사유에서는 각각 의견에 5호, 7호를 주신 거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입장인지 알 수 있을까요?

○ 000 주무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법률용어라든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도가 그렇게 깊지가 못해서 제가 잘못 이해를 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 5,500건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사업결과물, 성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존할 수 있는 자료인 공공데이터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보관을 하고 있었던 자료였거든요. 폐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 자료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원 소장처에 돌려줘야 되는 자료가 맞는데 저희가 추후에 어떤 추가적인 조사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아마 10년 전부터 이렇게 보관을 해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걸 또 발견을 했고요.

그런데 각각이라든가 각하라든가,

○ 000 위원(장)

그러면 서울시는 아예 그 자료를 이용을 못 한다는 거지요? 외부에 유출할 수도 없고, 내

부적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고.

○ 000 주무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원 소장처의 허가가 없으면요.

○ 000 위원(장)

그냥 형식상 가지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은 자료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저희 박물관 입장은 그렇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각하가 맞을 것 같은데요. 그냥 9호의 비공개 사유 검토 없이 그냥 각하 대상이 맞을 것 같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요.

그러면 혹시 지금 정보공개청구인이 서울역사박물관 측에 이 5,579컷의 나머지 비공개된 자료를 학술연구 목적으로 좀 접근 가능하냐라고 미리 한번 요청이 있었습니까?

○ 000 주무관

전화상으로도 연락을 주셨고, 그리고 응답소 민원으로도 같은 내용으로 한번 주셨는데요. 저작권에 대해서 저희 박물관에서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제3자의 소장자료는 저희가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원 소장처를 알려드렸습니다.

○ 000 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해당 소장자인 독일의 수도원 측과 서울역사박물관 측이 이렇게 지금 5,579컷을 넘겨받을 때 나름의 어떤 공개와 관련된 협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협약에서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지금 서울역사박물관이 원하면 220 몇 점이 아니고 전부를 다 풀어도 된다 이런 식의 협약까지는 아니었습니까?

○ 000 주무관

아니었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조사사업하고 전시사업 두 개가 동시에 오티리엔 수도원

대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전시 관련해서는 MOU를 체결을 했었습니다. 협약서를 체결을 했는데요. 거기서는 분명히 오티리엔에 저작권이 있고요. 허가된 자료만 활용을 하되, 상업적으로는 활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재사용하더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사업의 자료에도 해당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저희가 독일에 가서 이 5,500건에 대해서 재촬영을 해서 저희가 2차 저작물에 대한 그런 논리를 펴시는데요.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직접 보관하고 계신 자료를, 디지털로 보관된 자료를 저희가 직접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잠시 퇴장하셨다가 나중에 재입장해 주십시오.

(소관부서 주무관 퇴장)

○ 000 주무관

감사합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먼저 주심위원이신 000 위원님께서 의견 주십시오.

○ 000 위원(장)

이 사건 전시에 관해서는 청구인이 오해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청구인이 이게 역사박물관에서 재촬영해서 2차 저작물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 그걸 달라고 하시는 것인데요. 재촬영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 게 맞고요. 그다음에 협약서가 서울시에서는 MOU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영문공문본인데요. 특히 이런 경우에 영문본이 중요한데 거기에 MOU라는 말이 없고, 그냥 어그리먼트라서 그냥 정상적인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속력이 있는 협약으로 지금 보이고요. 여기에서 사진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도 독일 측에서 갖고 있는 것이 명시돼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것을 공개할 방법은 없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이것을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분명한 것은 9조 1항 7호에 따라서 기각을 할 수 있다는 건 확실해 보이고요.

그런데 5호 사유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7호 사유는 확실한 것 같고요.

다만 이거를 보유·관리 중인 정보로 볼 거냐 말 거냐의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재촬영한 거는 안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원본은 또 갖고 있는 거는 맞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사업 종료 후에 어떻게 폐기해라 이런 게 또 없다 보니까 그것도 이 후에 새로 사업을 열어서, 필요할 때는 또 사전승인을 받아서 일부라도 쓸 여지는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보관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기도 애매하지요.

그런데 제 생각인데요. 이거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다수 결정하는 대로 가기는 하겠지만요. 어쨌거나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것도 이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그냥 9조 1항 7호에 의해서 기각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추가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저작권법에 관련된 문제인데 서울시가 현행 지금 국제저작권법상으로 서울시가 이거를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사실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000 위원(장)

네.

○ 000 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1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000 위원(장)

넓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래서 저는 비공개 사유에 1호 사유도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 의견이고요.

○ 000 위원(장)

저도 000 위원님처럼 폐기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면 관리하는 정보에 넓게 포섭을 해서 일단 각호 사유로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도 그 7호에 따라서 비공개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1호는 해당 사항 없습니까?

○ 000 위원(장)

1호요?

○ 000 위원(장)

지금 저작권법상 지금 서울시가 지금 공개할 수 있는 지금 위치가 아닌데.

○ 000 위원(장)

그거는 저작권의 소송 문제고, 거기서는 비공개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못을 박아놓지는 않지 않았나요?

○ 000 위원(장)

저희가 그걸 여기다가 공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 000 위원(장)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못을 박아놨으면 1호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게 저작권 소유 문제라면 7호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저도 그냥 7호가 확실한 것 같은 게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다, 그러니까 저작권을 가진 자는 그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 그러니까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명시적으로 비공개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결론 기억해서요. 7호가 확실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000 위원(장)

7호가 확실한데 7호에 추가해서 1호를 더하자라는 이야기지요.

○ 000 위원(장)

위원장님, 지금 제 생각에는 그냥 확실한 것만 하는 게 더 나을 것도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알았습니다.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저도 7호에 따라 기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저도 7호 사유로만 기각 의견입니다.

소관부서께서는 재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주무관 입장)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 없음)

기각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7호 사유가 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32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안번호 2024-33] : (1인가구담당관-4474) ‘2024년 휴대용
안심벨(헬프미) 구매계약제안서 정량적 평가
결과보고’ 문서의 평가내용 일체

○ 000 위원(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안건 상정 다섯 번째고요.

의안번호 제2024-33호 1인가구담당관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000 위원님께서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000 위원(장)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안심벨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4개의 사업자가 지원을 응찰을 했고,

이 ▲▲▲▲가 만점 20점을 받아서 1위를 하고, 이 ▲▲▲▲만 낙찰이 된 거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에서 제출한 사업실적과 특허보유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 000 위원(장)

뭔가 평가점수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비공개 대상자료 5-3번, 첨부문서
로 주신 거예요. 정량평가기준 있잖아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장)

이거 비공개 자료에 포함이 됐는데 이것도 비공개 자료인가요?

○ 000 주무관

아니요. 정량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장)

포함돼서 이걸 사업자가 알 수 있는 자료예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장)

여기에 보면 사실 1위와 3위가 어떻게 점수가 매겨졌고, 자기가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업자가 이걸 모르시나. 이 기준을 보면 1위가 왜 만점을 받았고 3위가 이 점수를 받았구나 어느 정도 기준이 정립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청구인은 또 뭐가 이렇게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건가요?

○ 000 주무관

저희가 유사사업실적으로 해서 방법사업실적까지도 인정해 줬는데요.

이 회사는 어떤 걸 사업실적으로 제출했는지, 그리고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뭐 정상적으로 영업은, 사업은 할 수 있는 사업자인 거잖아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장)

그리고 여기서 5호는 왜 검토를 안 하셨나 해서요. 이거 입찰과 관련해서 생성된 문서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영업비밀로만 포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입찰과 관련해서 생성된 문서들이라서 이걸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 000 주무관

그 이유는 제가 2024년 정보공개업무 매뉴얼을 참고해서 확인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입찰 관련 내용보다는 여기 정보공개업무 매뉴얼에 보면 서울시의 국가정보통신 서비스평가 결과에서 2013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거 찾아내서 제가 적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런데 이게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가 낙찰을 받았고, 그 입찰경쟁에서 평가기

준이 매겨진 자료라서 이게 입찰 관련, 이거 영업비밀도 해당하기는 하겠지만 굳이 이게 영업비밀이 크게 없고 뭐 그냥. 그래서 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게 이게 다 공개된 영업인데 이게 무슨 영업비밀이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평가점수는 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입찰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매긴 정보라서 이게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기보다는 입찰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들이라서 이게 그쪽으로 포섭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 000 주무관

그 부분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000 위원(장)

영업비밀도 갈 수는 있어요. 3년간 유사실적 8억 원 이상 뭐 이런 것들, 또 사업실적 건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적지는 않았지만요. 이게 넓게 보면 영업비밀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배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라 입찰 관련 생성정보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만약에 넓게 포섭한다면 5호하고 7호 이렇게 포섭을 해서 비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질의 있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000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참고자료의 제3자 의견청취결과를 보면 지금 정보공개청구인은 정량적 평가결과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제3자 의견청취결과를 보면 마치 지금 낙찰받은 회사가 입찰제안서부터 포함해서 모든 것을 지금 다 공개청구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 000 주무관

저희가 정량평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업체에 받는 자료가 사업 수행능력평가서라고 별도

제본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료 안에 업체에서 적은 게 기관 일반현황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에서는 지금,

○ 000 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정보공개청구인은 그 제안서의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량적 평가결과보고 이 한 장짜리를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정확히는 정량적 평가결과보고보다는 여기 ▲▲▲▲에서 제출했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있는 수행실적이 아예 일일이 나와 있는 목록을 요구했습니다.

○ 000 위원(장)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지금 소관부서 담당자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세요.

○ 000 주무관

감사합니다.

(소관부서 주무관 퇴장)

○ 000 위원(장)

주심위원님께서 먼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000 위원(장)

저는 이거 입찰계약과 관련된 문서라고 봐서 5호를 먼저 검토를 했고요.

이게 7호는 자세하게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특허권이니 이런 것들 몇 개와 매출 뭐 이런 것도 자세히 적혀 있고 기업 회사명도 있으니깐요. 7호도 넓게 포섭을 해서요. 5호, 7호에 따라서 기각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저도 동의합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 000 위원(장)

저도 주심위원님 의견 동의합니다.

○ 000 위원(장)

저도 동의합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저도 7호 사유로 기각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소관부서께서는 재임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주무관 입장)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 없음)

사유는 지금 주심위원님 의견대로 5호, 7호 사유에 공통해서 기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33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